

310.111
90142

2005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사 후 조 사 지 침 서

2006. 6.

B55449



통 계 청

차 례

I. 조사개요	1
II. 조사시 유의사항	4
III. 조사 대상 사업체의 구분	6
1.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6
2.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7
3. 조사대상 사업체의 구분	8
IV. 사후조사절차	14
1. 조사준비	14
2. 사후조사 실시	16
3.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16
4. 전입 사업체명부 대조작업	17
5. 조사표류 제출	17
6. 조사일정	18
V. 사후조사표 작성요령	19
1. 사후조사 사업체 명부	19
2. 사후조사표	21
3.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46
VI. 내용검토	47
1. 내용검토	47
2. 오류유형	54
VII. 행정사항	58

I . 조사개요

목 적

-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에 대한 완전성(completeness)과 정확성(accuracy) 검증
 - 금년 4월중에 실시한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체의 누락·중복, 사업체의 조사항목에 관한 착오 등 조사결과에 대한 정도(精度)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오차분석을 통한 향후 총조사 계획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본조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착오내용을 파악하여 차기 조사의 정도 제고 방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체의 누락·중복규모와 유형 파악, 정확도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
 - 전국 및 지역별 누락율, 중복율, 착오율 등을 파악하여 조사결과 분석 및 자료이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 사 기 간

- 사후조사 준 비 : 2006. 6. 15. ~ 6. 16.(2일간)
- 사후조사 본 조 사 : 2006. 6. 19. ~ 6. 30.(기간중 11일간)
- ※ 총조사 본 조사 조사기간 : 2006. 4. 10. ~ 4. 29.(20일간)

조 사 기 준

- 조사기준일 : 2005.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05. 1. 1 ~ 12. 31.(1년간)

조 사 대 상

- 조사대상 : 사후조사 지역으로 표본 추출된 조사구내에 소재하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 명부, 신규 및 누락사업체)

조 사 사 항

- 본조사 조사표 작성내용의 정확성 여부(9개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및 성별, 창설년월,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연간 영업 개월수)
- 조사대상 사업체의 누락·중복
 - 조사항목 : 현 사업장 사업시기, 사업체 유형, 조사누락 사유, 중복 조사 사유,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조사 응답방법, 사후조사 응답자

조 사 방 법

- 총조사 결과가 사전출력된 사후조사표를 가지고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 모든 사업체(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 신규 및 누락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500개 조사구 내, 약 23,400개 사업체)

자 료 처 리

- 웹입력프로그램에 의하여 지방청(사무소, 출장소)에서 직접 조사표를 입력(입력요령서는 추후 통보 예정)

결 과 자 료 분 석

- 본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누락률, 착오율, 중복률 등을 집계

※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개요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승인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전국 제 10137호
서울 20105호 부산 20204호 대구 20303호 인천 20403호
광주 20504호 대전 20604호 울산 20702호 경기 21003호
강원 21103호 충북 21203호 충남 21304호 전북 21403호
전남 21503호 경북 21604호 경남 21704호 제주 21803호
 - 서비스업총조사 : 제 10108호
- 서비스업총조사 조사규칙(재정경제부령 제 487호)

2.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3. 조사시기

- 조사 기준 일 : 2005. 12. 31.
- 조사대상 기간 : 2005. 1. 1.~12. 31.(1년간)
- 조사실시 기간 : 2006. 4. 6.~ 4. 29.(준비조사 2일, 본조사 20일)

4.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방식

5. 조사항목

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총조사의 공통조사항목 : 9개 항

-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창설년월 및 사업자등록번호
- ④ 소재지 ⑤ 조직형태 ⑥ 사업체 구분
- ⑦ 사업의 종류 ⑧ 종사자수 ⑨ 영업기간

나. 총조사 공통조사항목 : 3개 항

- ① 정보기술 기반 및 활용 ② 사업장건물면적
 - ③ 사업실적 (① 매출액 ② 매출원가 ③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연간매출액 조사

다. 특성조사항목 : 10개 항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부문 : 5]

- ① 상품매입처별 구성비(도·소매업) ② 객실(석)수(숙박·음식점업)
- ③ 상품판매처별 구성비(도·소매업) ④ 체인점 가입여부(소매업·음식점업)
- ⑤ 매장면적(소매업)

[서비스업 부문 : 5]

- ① 교육시설(교육서비스업) ② 연구·기술직 종사자 현황(통신업, 사업서비스업)
- ③ 경기·오락시설(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④ 병·의원 입원시설(보건업)
- ⑤ 사회복지수용시설(사회복지사업)

라. 기업체 조사항목 : 6개 항

- ① 자본금 또는 출자금(회사법인) ② 유형자산
- ③ 무형자산 ④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⑤ 결산마감월(본사조사)
- ⑥ 본사관할 사업체현황(본사조사)

6. 자료처리 : 웹기반에 의한 현지 입력

Ⅱ. 조사시 유의사항

1. 조사자세

- ◇ 조사의 성패는 조사 직원의 성실한 조사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함
- 또한, 보다 정확한 사후조사를 위해서는 지방청(사무소, 출장소) 및 조사 직원의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됨
- ◇ 사후조사는 이미 방문하여 조사한 사업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므로 재방문 및 같은 사항을 다시 묻는데 따른 사업주의 반발 또는 응답 기피현상 등이 우려되므로 언행 및 복장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가. 복장단정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조사에 임해야 함
-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 하여야 함

나. 경어사용

- 언어는 반드시 공손한 경어를 사용

다. 인사장 배부 및 사후조사 취지 설명

- 처음 사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반드시 인사장을 배부한 후 사후 조사를 위한 방문취지를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라. 비밀의 유지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됨(통계법 제23조)

※ 총조사는 임시조사원에 의해 조사된 사항이므로 매출액 등과 같은 응답 기피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때 특히 유의바람

마. 행정기관의 협조

- 담당조사구의 본조사에 앞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협조를 얻도록 함
- 단, 시군구의 협조는 조사구요도 복사, 조사구의 위치 및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 정도에 한정하며 특히 현지 동행은 절대 사양하도록 함

바. 응답거부에 대한 조치

- 응답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조사구의 시군구장 협조를 얻어 조사를 수행

사. 방문시기 및 장소의 선택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함
- 유흥업소 등을 방문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함

아. 재방문 대상사업체

- 조사해야 할 사업체에 아무도 없을 경우
- 적합한 응답자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울 경우
- 조사가 끝난 후 기입의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 조사업무에 필요한 다음의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을 확인해야 함
 - ① 사후조사 출력조사표
 - ②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 ③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 명부
 - ④ 사후조사 지침서
 - ⑤ 인사장
 - ⑥ 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 복사본
 - ⑦ 조사구요도 복사본
 - ⑧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 ⑨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 ⑩ 빈 사후조사표
 - ⑪ 사후조사 조사표류 표지
 - ⑫ 사업체 확인 스티커

※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는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내검용으로 지방청에 배부된 것으로 활용.

Ⅲ. 조사 대상 사업체의 구분

1.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 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한 소유권 또는 통제 아래
 - ② 재화의 생산·판매나 서비스제공 등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의 경영단위를 말함
 - ※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출장소, 영업소, 상점, 은행, 학교, 학원, 개인교습소, 병원 등

•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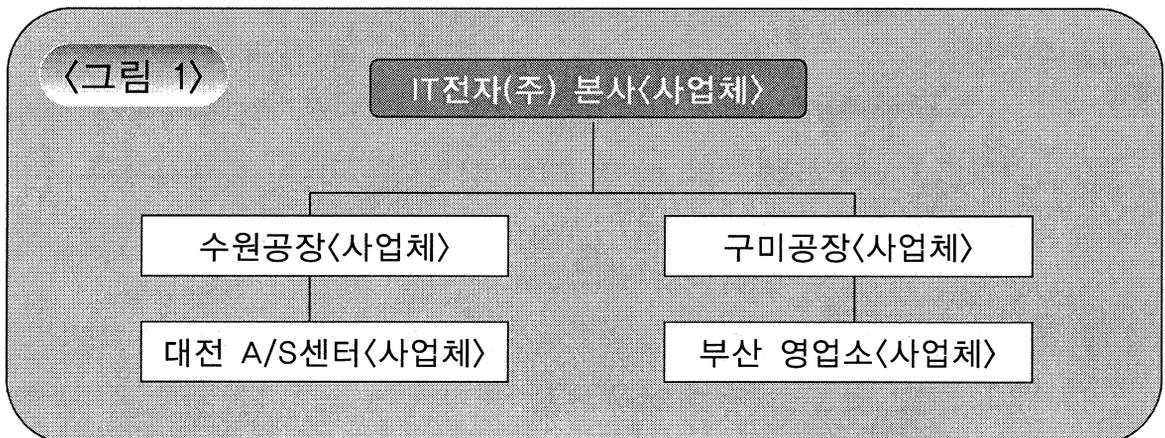
- 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서 자율적으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임

- 사업체와 기업체의 구분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그림 1 참조>

- 아래 그림에서 기업체인 IT전자(주)는 5개의 사업체(본사, 수원공장, 구미공장, 대전 A/S센터, 부산영업소)로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각각 조사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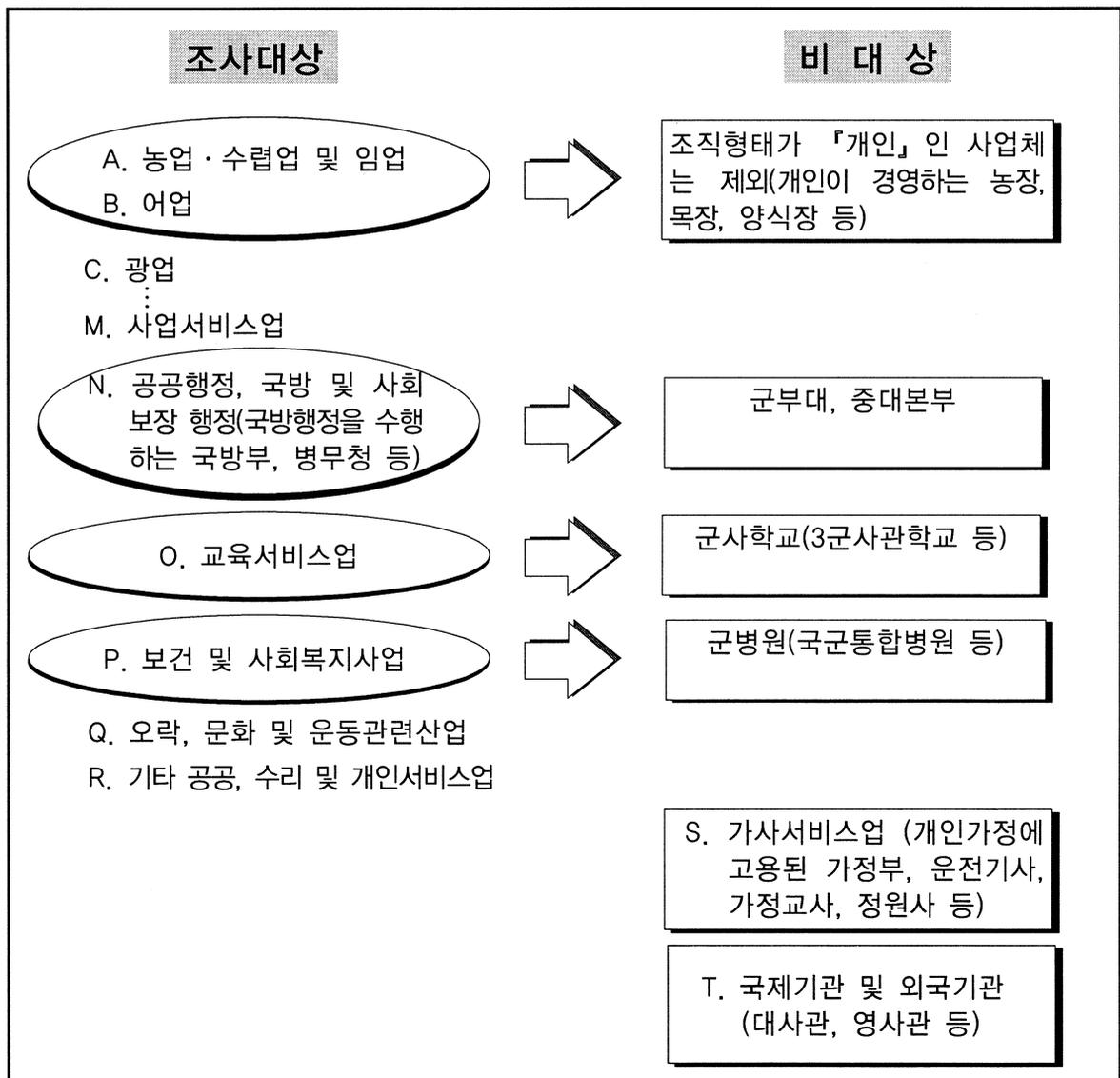
[IT전자(주) 의 구성도]



2.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 조사기준일(2005. 12. 31.)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및 2006년 신규창설된 사업체중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 조사대상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 국방관련 사업체 중 군부대, 중대본부, 군사학교, 군병원 등
 - 국제 및 외국 기관
 - 가사서비스업
 - 고정 설비가 없는 이동 판매업(행상, 차량 등을 이용한 판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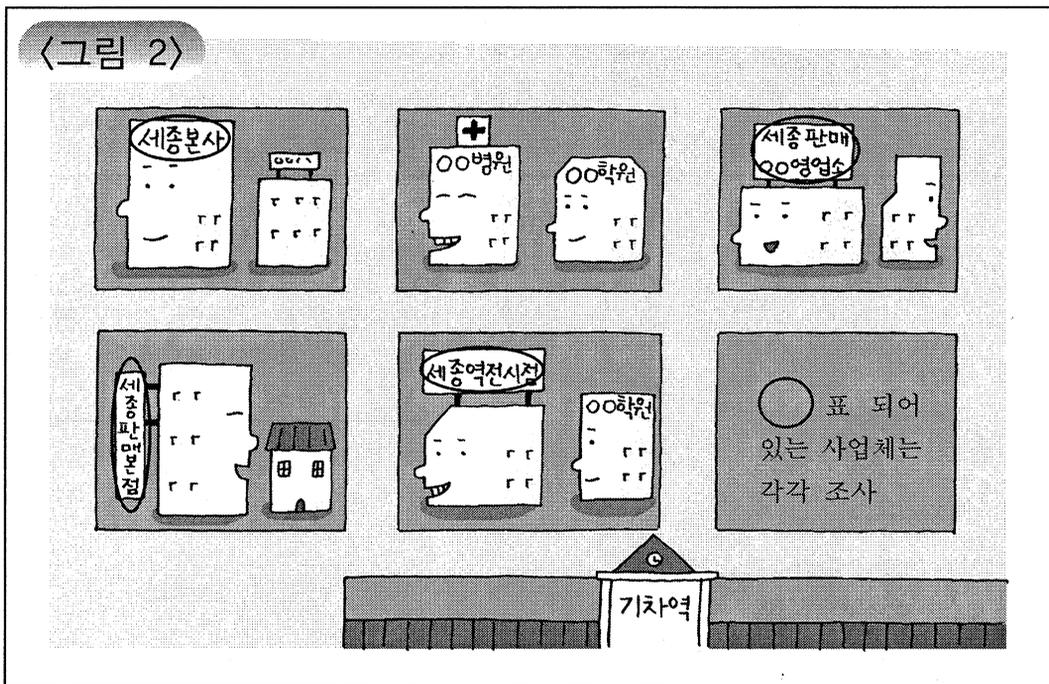
〈표1〉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3. 조사대상 사업체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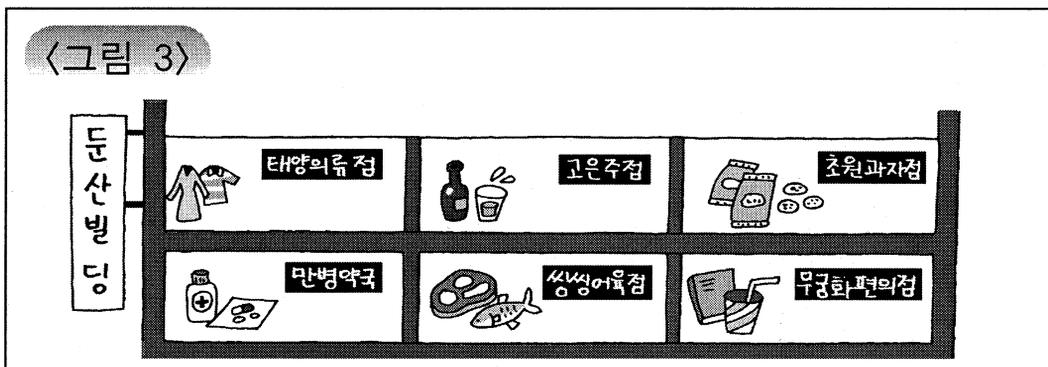
가. 장소에 의한 구분

-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2참조>
- 서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지역적으로 인접(담장, 도로, 하천, 제방 등에 의해 분리)해 있는 경우 임금지불대장, 매입·매출 명세서, 현금출납장부 등 경영 장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1개 사업체로 조사



나.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산업활동을 영위하여도 경영주체가 서로 다르다면 경영 주체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3참조>



- 백화점의 사업체 구분
 -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 외형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관리 사무실에서 직영, 임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사업체를 파악하여 조사
 - 백화점의 매장종류별 사업체 구분방법 <그림 4참조>
- 직영매장과 특정매입매장은 1개 사업체로 통합하여 조사

백화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

- 직영매장: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재고 등 경영관리가 백화점 측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짐
- 특정매입매장: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 상품의 재고, 판매 등을 백화점에서 직접 관리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 마진율만큼 수수료를 받음

- 임대매장: 백화점 직영매장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백화점의 임대매장

- 임대(갑)매장: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물품의 판매, 구매, 재고관리 등이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이루어짐
- 임대(을)매장: 일명 수수료매장이라 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판매관리는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은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운영

[특정매입매장과 임대매장의 비교]

	매장 설립근거	매장권리 (사용·수익권) 귀속	매장의 이전	조사대상
특정 매입매장	특정매입 계약에 기초	백화점·할인마트 등에 귀속	백화점·할인마트의 방침에 따라 이동이 가능	백화점 할인마트
임대매장	임대계약에 기초	임차인에 귀속	계약에 의하여 한 장소로 고정	임대매장을 빌린 영업주

<그림 4>

○○백화점

라운지(직영)	수영장(직영)		
가구점(직영)			
전자제품(직영)			
전자1(특정매입)		임대(갑)	임대(을)
임대(갑)	임대(을)		
B1 주차장(직영)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사례

사례 1 역, 극장, 운동경기장, 놀이공원, 백화점, 호텔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매장이 있는 경우

- 임대매장은 매장별로 각각을 별개의 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
- 직영매장은 별도의 계산대가 있더라도 총괄 관리 주체에 포함하여 1개 사업체로 조사

사례 2 기관 구내의 이발소, 매점, 서점, 식당 등의 경우

- 기관에서 직접 운영 : 해당 기관에 포함하여 조사
- 외부인이 임차하여 운영 : 각각을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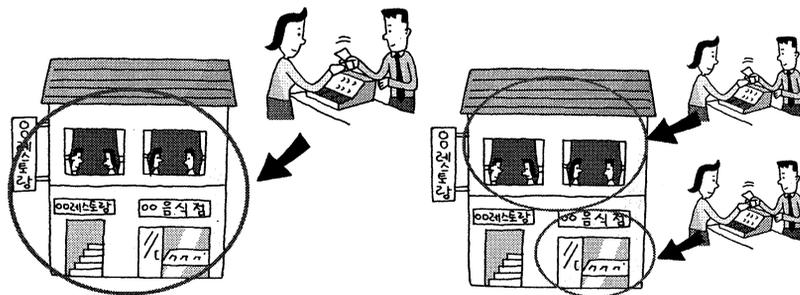
사례 3 백화점에서 영업주가 수시로 바뀌며 단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을 하는 임시 행사매장

- 조사대상에서 제외

다.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

- 장소와 경영주체가 동일하여도 임금지불대장, 매입·매출명세서, 현금출납 장부 등 경영 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경영 장부단위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그림 5참조>

<그림 5>



경영장부에 의한 구분사례

사례 4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가 같은 대학과 부설 병원, 연구소 등이 함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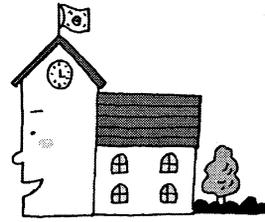
- 1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가 있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 사업체로 조사

사례 5 동일 장소에서 동일 경영주가 운영하는 선·포교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경우

- 1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가 있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개 사업체로 조사

라. 기타 예외적인 사업체 구분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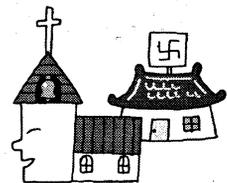


- 학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의 사업체로 조사
- 단,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
 -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야간반, 시간제 과정, 평생교육원 등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별개 사업체로 조사하지 않고 해당 고등학교, 대학교에 포함하여 조사
 - ▶ 동일재단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학교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 본교와 분리된 다른 장소에 학교의 제 2, 3 캠퍼스, 분교 등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 ▶ 일반대학원은 1개 사업체, 특수대학원은 각각을 별개 사업체로 구분

- 예 <한국대학교> • 한국대학교 일반학부(서울캠퍼스) —————▶ 사업체
 • 한국대학교 일반학부(수원캠퍼스) —————▶ 사업체
 <일반대학원> • 한국대학교 대학원 —————▶ 사업체
 <특수대학원> • 한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업체
 • 한국대학교 보건대학원 —————▶ 사업체
 • 한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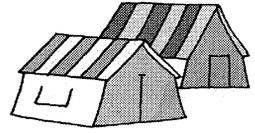
▶ 종교단체

- 교회, 사찰 등이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장, 보육원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장, 보육원 등이 교회, 사찰 등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회계장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의 사업체로 조사



5일장 등 비상설 시장 내의 사업체

- 고정시설(풍우를 막는 시설을 갖추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갖추고 있는 시장 내의 사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행사 및 노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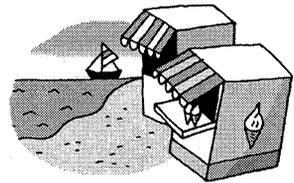


각종단체(작목반, 어촌계, 동호회, 종친회, 조기회, 동창회 등)

- 해당 단체의 고유 업무를 위한 상근종사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만 사업체로 조사
 - 사업체(약국 등)를 별도 경영하며 동창회 등 각종 단체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동창회는 사업체로 보지 않음

계절사업체

- 민박, 해수욕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과 같이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2005년 중 1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체로 봄
 - 피서지나 산지 등에 고정적 설비를 갖추고, 연중시기를 정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조사 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상근종사자가 있으면 조사



가정집에서 하숙, 피아노교습소 등을 운영

- 조사자가 인지 가능한 간판 또는 표지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체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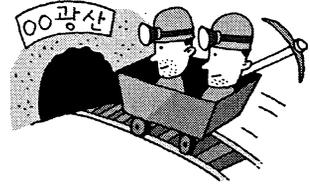


외판원

- 보험, 화장품, 자동차 등의 외판원은 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개개인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 않고, 해당 출장소, 대리점 등의 무급종사자에 포함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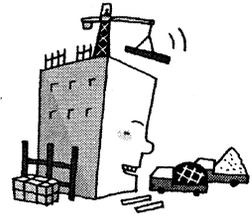
▶ 광 산

- 다른 사람의 광산 일부에 대한 채굴권을 맡아 경영하는 광산(덕대)은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하지만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현장 및 현장사무소는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



▶ 건설현장

- 건설현장의 현장사무소는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예 : ○○건설××지사)에 포함하여 조사. 따라서 현장사무소는 별개 사업체로 보지 않지만, 하도급업체는 원도급 업체(하청을 준 사업체)와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IV. 사후조사 절차

1. 조사준비

가. 조사관련 자료 입수

- 『조사구 요도 복사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하여 복사하여 활용
- 조사구 요도 원본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
- 『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 복사본』 : 지방청에 보관하고 있는 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를 복사하여 활용
-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출력조사표』, 『빈 사후조사표』, 『사후조사 지침서』, 『인사장』, 『사후조사 조사표류 표지』, 『사업체확인 스티커』 : 본청에서 배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매수 확인
-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 양식』,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양식』,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양식』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홈페이지(<http://eb.nso.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조사구 경계, 사업체 확인 및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 조사구요도 복사본, 수정·보완된 본조사용 사업체명부 복사본,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등을 가지고 현지 표본 조사구를 답사하여 조사구 경계 및 사업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사업체 출입구의 오른쪽 상단에 스티커를 부착함
- 표본 조사구내 모든 조사대상사업체가 비이동사업체(본조사 기간과 사후조사 기간 모두 영업활동을 하는 조사대상 사업체)인지 아니면 누락, 중복, 전출, 신규, 전입, 폐업, 계절 및 휴업, 조사비대상 사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조사구요도복사본 및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등을 적색펜으로 수정 보완

- **누락사업체**
 - 2006. 4. 9. 이전부터 존재한 사업체(계절 및 휴업사업체 포함)가 조사에서 누락된 사업체
 - 본조사시 대상외, 폐업으로 조사된 사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어야 했는데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착오로 1개의 사업체로 조사된 경우
- **중복사업체** : 1개의 사업체가 2개의 사업체로 조사된 경우
- **전입사업체** : 2006. 4. 10.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해온 사업체
- **비이동 사업체** : 본조사시 정상적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사후 조사시에도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
- **계절 및 휴업사업체** : 본조사시 조사된 사업체가 사후조사 기간중에 휴업중이거나 계절 사업체인 경우
- **신규사업체** : 2006. 4. 10. 이후 창설된 사업체로 본조사시 조사표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체
- **전출사업체** : 본조사시 조사되었으나 이후 다른 장소로 전출한 사업체
- **폐업사업체** : 본조사시 조사되었으나 이후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 **조사 비대상**
 - 본조사시에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
 - 본조사시에 존재하지 않은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 등

다. 표본 조사구 대체

- 표본조사구의 실제 사업체수를 먼저 확인하여 사업체수가 30개 미만이거나 70개를 초과할 경우, 즉시 소속 지방청(사무소)와 통계청 산업통계과로 연락하여 표본 조사구를 대체함

2. 사후조사 실시

- 표본 조사구로 선정된 조사구내의 모든 사업체(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 신규 및 누락사업체)는 사후조사 조사대상이므로 빠짐 없이 사후조사표를 작성
 - 누락, 신규 및 본조사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는 새로운 빈 사후조사표를 작성해야 함
 - 본조사기간중 대상외, 사업장 철거 및 폐쇄인 사업체도 사후조사 대상이므로 출력된 사후조사표를 작성하고 만약 그 장소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빈 사후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함
 - 1 ~ 9항목 : 본조사와 동일하게 조사하지만, 특히 창설년월은 사업체 등기일, 사업체 이전, 업종변경(대분류 변경) 등과 관계없이 최초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을 파악해야 함
 - 10 ~ 16항목 : 본조사 항목과 달리 누락 및 중복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주의
- 인사장은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답책임자에게 전달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응답자에게 전달도 가능

3.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 사후조사표 입력
 - 사후조사표 및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입력은 웹입력프로그램에 의한 현지 입력
- 내용검토
 - 표본조사구내 모든 사업체가 사업체유형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
 - 사후조사된 항목간의 연관관계 검토
 - 창설년월, 조사누락 사유, 중복조사 사유 등이 조사기준에 따라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확인

- 사후조사표,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조사구요도,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등이 잘 작성 되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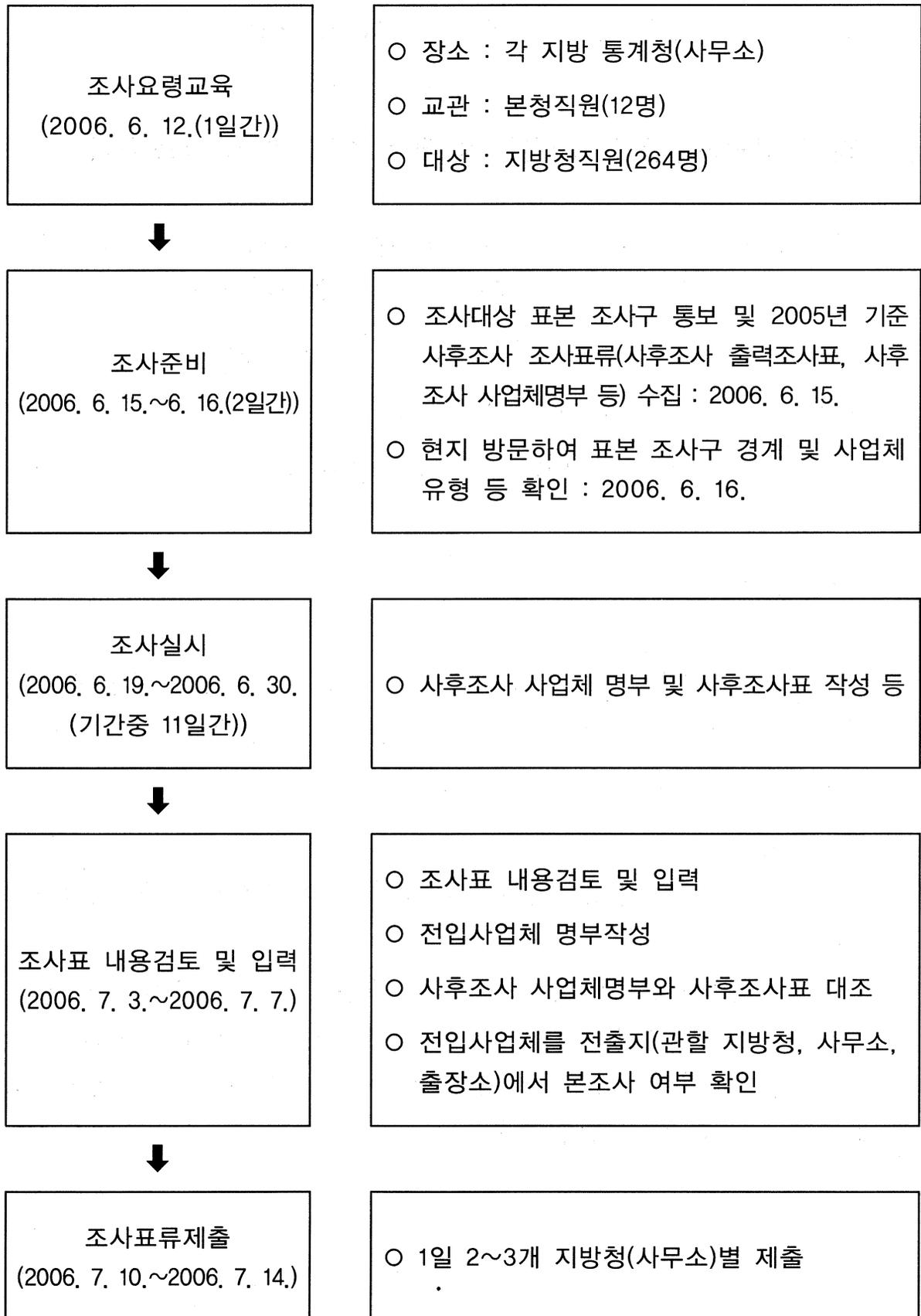
4. 전입 사업체명부(전입 사업체의 전 주소지 명부) 대조작업

- 2006. 4. 10. 이후 타지역에서 전입해 온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는 전출지에서 총조사 당시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11**사업체 유형」 이 ③전입사업체이면 반드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나머지 주소까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명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5. 조사표류 제출

- 제출자료 : 사후조사표, 사후조사구 요도,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 제출방법
 - 조사완료 후 각 지방청(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출장소 분을 취합하여 제출
 - ①사후조사 사업체명부, ②사후 조사구 요도, ③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④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⑤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⑥사후조사표(사업체일련번호순)를 순서적으로 조사구별로 함께 철하여 제출

6. 조사일정



V. 사후조사표 작성요령

1.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2005년기준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명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체명부 매수	조사담당자
			매중 매	소속 : 이름 : (인)
⋮	⋮	⋮		

총조사			사업체명	주소	사업체유형									응답불응사업체	비고 (전출·전입일자 등)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사업체일련번호			① 누락	② 중복	③ 전입	④ 비이동	⑤ 계절및휴업	⑥ 신규	⑦ 전출	⑧ 폐업	⑨ 조사비대상		
합 계															

조사구의 특이사항에 관한 의견란	2005 총조사 조사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 전화번호 : - 성별 : ① 남 ② 여 - 연령 : 만()세 - 직업 : ① 통리반장 ② 가정주부 ③ 부녀회원 ④ 대학생 ⑤ 퇴직공무원 ⑥ 기타 ()

가.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작성요령

- 사업체명부 매수는 해당 조사구의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매수를 기입한다.
예) 2매중 1매, 2매중 2매
- 조사담당자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이름을 기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 누락, 신규 및 본조사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는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사업체일련번호의 끝번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사업체유형은 조사표에 작성된 유형번호와 일치하게 해당번호에 “○” 표시를 한다.
- 합계란의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수와 조사표의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수가 일치해야 한다.
- 응답 불응사업체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체를 말한다.
- 비고는 2006. 4. 10. 이후 전출·전입 일자를 기입한다.

나. 조사구의 특이사항에 관한 의견란

- 「조사구의 특이사항」은 조사구의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기입한다.
예) 상가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빌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등

다. 2005 총조사 조사원의 인적사항

- 본조사 당시 실제 조사했던 조사원의 인적사항(조사원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기록한다.

2 사후조사표

가. 일반적인 사항

- 난외 사항 및 사전출력사항은 절대 수정 불가
- 사후조사표 종류는 출력된 사후조사표와 빈 사후조사표가 있다.
- 실제 조사할 사업체와 출력된 사업체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본조사 시점(2006. 4. 10.) 이후 진출 및 전입한 사업체가 없는지 확인한다.
- 총조사 사전출력사항과 사후조사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조사표 항목 중 해당번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해당 번호에 체크하고, 잘못 기입하여 고칠 경우는 두줄(=)로 긋고 수정하며, 해당하지 않은 문항은 사선처리(\)한다.
- 이 조사는 지난 1년간(2005. 1. 1.~12. 31.)의 실적이 조사대상이다.
 - 회계년도(결산 마감월)가 다른 경우 최근 1년간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 사업체별 조사이므로 본사,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사업체 실적분만 조사하여야 한다.
 - 본사에 지사, 지점 실적 또는 이와 반대로 지사 지점에 본사의 실적이 포함되어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업체가 전입한 경우,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및 조사대상 사업체구분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각각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출력된 사후조사표의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및 조사구 특성번호, 사업체일련번호는 본조사표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임의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나. 사업체유형별 사후조사표 작성방법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 내용	조사표 작성방법
누락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4. 9. 이전부터 존재한 사업체(계절 및 휴업사업체 포함)가 조사에서 누락된 업체 ○ 본 조사시 대상외, 폐업으로 조사된 사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외사항은 모두 기입 - 조사항목중 ⑬중복조사 사유 ⑭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⑮총조사 응답방법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사업체로 조사되었어야 했는데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 착오로 1개의 사업체로 조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사업체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는 비이동사업체로 조사 - 다른 1개는 누락사업체로 조사
중복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의 사업체가 2개 사업체로 조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는 비이동사업체로 조사 ○ 다른 1개는 중복사업체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중 ①~⑨번 항목, ⑫ 조사누락 사유 ⑭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는 제외
전입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4. 10.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해온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외사항은 모두 기입 -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를 작성하여 전입 이전 주소지의 관할 지방청(사무소)으로 보내어 본조사시 조사표 작성여부를 확인
비이동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시 정상적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사후조사시에도 계속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중 ⑫조사누락 사유 ⑬중복조사 사유 ⑭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항목은 제외
계절 및 휴업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사시 조사된 사업체가 사후조사 기간중 휴업중이거나 계절 사업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 내용	조사표 작성방법
신규사업체	○2006. 4. 10. 이후 창설된 사업체로 본조사시 조사표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체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 난외사항은 모두 기입 - 조사항목중 ⑨연간매출액, ⑫ 조사 누락 사유 ⑬ 중복조사 사유 ⑭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⑮총조사 응답방법은 제외
전출사업체	○본조사시 조사되었으나 이후 다른 장소로 전출한 사업체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폐업사업체	○본조사시 조사되었으나 이후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조사비대상사업체	○본조사시 조사대상이 아닌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 ○본조사시에 존재하지 않은 사업체가 조사된 경우	○해당되는 사항만 조사

다. 난외사항

행정구역분류부호							
		-				-	
총 조사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				

- 새로운 빈 사후조사표에 작성되는 신규, 누락 및 본조사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의 사업체일련번호는 끝 번호 이후에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라. 총조사 사전 출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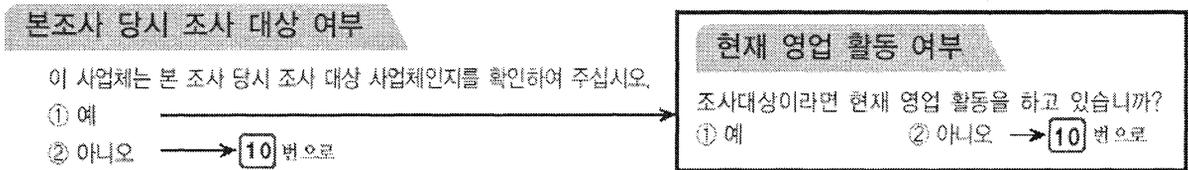
총조사 사전출력 사항										
사업체명							응 답 자	성명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전화 () - () - ()		
창설년월					년				월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로·동·반		번호	
사업장 변동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③ 대상외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조직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단체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① 주사업										
② 부사업										
종사자 수 (단위: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계
① 남										
② 여										
③ 계										
연간매출액										
• 총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예산집행액, 지원금 등)						• 연간 영업 개월수 <input type="text"/> 개월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사업체명, 대표자명 및 성별, 총조사 응답자, 창설년월,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연간 영업개월수는 총조사 사전출력사항임
- 신규, 누락, 본조사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 그리고 본조사시 대상외사업체, 철거 및 폐쇄사업체 장소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새로운 빈 사후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사후조사의 사전출력사항 사업체명에 이들 사업체 명칭을 기입

마. 사업체에 관한 사항

☒ 조사대상여부



- 해당사업체가 사후조사 지침서의 III. 조사대상 사업체의 구분을 참조하여 조사대상사업체이면 ‘①예’에 표시하고 현재 영업활동여부를 조사하며 그렇지 않으면 ‘②아니오’에 표시한 후 10현 사업장 사업시기로 이동한다.
 - 단, 계절 및 휴업사업체는 현재 영업활동여부가 ‘②아니오’에 해당되어도 사후 조사표를 작성
- 해당사업체가 사후조사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①예’에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계속조사하고,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으면 ‘②아니오’에 표시하고 10현 사업장 사업시기로 이동한다.
 - 중복사업체일 경우 하나는 본조사 당시 조사대상여부를 ‘①예’로 조사하고 나머지는 ‘②아니오’로 조사 한다.

○ 사업체 유형별 작성요령

사업체 유형		본조사 당시 조사대상여부	현재 영업활동여부	사후 조사표 작성
누락사업체		예	예	빈 조사표
			아니오	
중복 사업체	한개 비이동사업체	예	예	출력조사표
	나머지 중복 사업체		아니오	
전입사업체		예	예	
			아니오	
비이동사업체		예	예	출력조사표
			아니오	
계절 및 휴업사업체		예	예	출력조사표
			아니오	
신규사업체		예	예	빈 조사표
			아니오	
전출사업체		예	아니오	출력조사표
폐업사업체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조사 비대상사업체		아니오	-	출력 조사표

1 사업체명

1	사업체명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호	통	반
			별당·시장·상가		봉	층	호

-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대표자명, 취급상품명 순으로 기입
- 지점, 분점, 영업소 등의 경우 「기업체 명칭+지사(점)명, 영업소」 형식으로 반드시 지사(점)명, 영업소 공장명도 기입
예) 한국생명(주) (X) => 한국생명(주) 대전영업소(O)
- 소재지는 사업체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현행 법정 읍·면·동, 가·리와 호·통·반까지 상세히 기입

② 대표자명 및 성별

2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	--	----	-----	-----

-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 성명을 기입(본사 대표자가 아님에 주의)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한 명만 기입
=> 지점, 영업소, 공장인 경우 지점장, 영업소장, 공장장명을 기입
- 대표자 성별의 해당 항목은 반드시 표시

③ 창설년월

3 창설년월					년			월
--------	--	--	--	--	---	--	--	---

- 창설년월을 착오 또는 고의로 변경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설년월 기준에 따라 정확히 조사
- 등기일이나 장소 이전여부, 산업 대분류변경과 관계없이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최초 시작한 시점을 기입
-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창설년월은 본사(점)의 창설시기가 아니고 그 지사 등이 현재의 영업을 시작한 시기를 말함
=> 창설년월로 보는 사유
 - 현재의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때
 - 개인사업체가 상속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영권을 이전시킨 때
 - 조직형태가 바뀐 때
 -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등
 - ※ 단, 같은 조직형태 범위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해당 안됨
 - 유한회사 => 주식회사 등(물적회사=>물적회사)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하나로 대등 합병(병합)되었을 때
 - ※ 주의 : 흡수합병은 제외
 - 자회사,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 형태의 사업체가 새롭게 개설되었을 때

=> 창설년월로 보지 않는 사유

- 사업내용이 산업대분류를 변화시킬 정도로 크게 변할 때
 - 소매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변경 등
- 상속으로 인수받은 때
- 사업체가 이전되었을 때
- 신축·개축 등으로 일시적 장소이전 후 본래의 장소에서 다시 개업하였을 때
- 폐업 후 사업체명만 변경하여 다시 영업을 개시한 때
- 화재 등 그 밖의 재해 등을 입은 후 다시 영업을 개시한 때
-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흡수·합병되었을 때 흡수한 사업체

4] 사업장 변동

4 사업장 변동

·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를 하십시오.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 사업장이란 전년 또는 금년에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던) 장소를 말함
- 사업장 변동은 사업체의 변경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전년과 비교하여 현재 동일한 장소에 사업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로 결정함

① 사업장 존속

- 전년에 사업체가 있었던 장소에 금년에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 동일 사업 장소에서 전출입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여부와는 관계없음
- 상근종사자가 있는 휴업사업체 또는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인 휴업사업체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 전년 조사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사업체가 새로 입주한 경우

- 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사업체가 새로 입주한 경우
 - 건물은 있었으나 미입주 등으로 전년 조사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에 새로 사업체가 입주한 경우
 - 전년 조사시 누락된 사업체
 - 본조사시 새로 파악된 사업장의 경우
- 본조사시 대상외, 폐업으로 조사된 사업체가 조사대상인 경우 사업장변동 작성방법
- 수정·보완된 본조사 사업체명부의 출력된 사업장 변동부호를 그대로 이기(II) 사업체 유형부호는 ① 누락사업체로 조사)

5] 조직형태

5] 조직 형태

·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 하십시오.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단체

① 개인사업체

- 법인격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 법인이 아닌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
-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사업체
- 예) ××전자(주) 둔산대리점, 롯데리아(주) ○○점 등

② 회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외국회사란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③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함
 -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정부투자기관(공사, 지방공사, 공단 등)
=>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지방공사, 강남병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무역협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정당 등
 - 농·림·수·축산업협동조합(단위조합 포함),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 ※ 단,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로 전환된 공사·공단은 회사법인에 해당(예 : 한국가스공사(주), 한국전력(주))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소재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그 소속기관
 - 입법부
 - 사법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소속기관)
 - 국·공립학교, 국·공립의료법인

⑤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
- 법인격의 유무는 법인등기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⑥ 사업체구분

6 사업체 구분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①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는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사업체는 모두 ①단독사업체로 표시
예) 동대문 우체국, 수유 3동사무소, 동구보건소, 서울대학교 등

② 본사(점)(1기업 다사업체)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이상 거느리며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 하나의 기업에 본사(점)은 단 하나임
- 본사란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본사로 착각하기 쉬운 경우
 - 지방에 소재한 대형사업체의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도권에 있는 이런 사업체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주 거래업체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하청관계에 있는 사업체가 서로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 체인가맹점의 본부회사를 본사로 착각하는 경우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1기업 다사업체)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

7] 사업의 종류

7 사업의 종류

	(1) 사업 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① 주사업				
② 부사업				

(1) 사업내용

- 사업체가 영위하는 산업활동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① 주사업, 그 이외의 사업 중 매출액 비중이 다음으로 큰 사업을 ② 부사업에 기입
-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종류)인지
- 이들의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어느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입

=> 본사(점) 등에서 관리사무만을 하고 있는 사업체, 즉 영업소·공장 등 사업체가 다른 장소에 있고 이들 사업체의 관리사무만을 하고 있는 본사·본점은 관리하에 있는 모든 사업체의 산업활동 중 주된 사업내용을 ① 주사업에 기입하고 부차적인 산업은 ② 부사업에 기입

(2) 비중

- 지난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기입
-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비중의 합 ≤ 100
- 3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비중의 합은 100%이하가 될 수 있음

(3)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 해당 사업체의 생산품, 취급품목 또는 서비스 종류의 비중 (매출액 기준)이 가장 큰 순서대로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 품목을 2~3개 기입
- 2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여 ① 주사업과 ② 부사업을 기입한 사업체는 ① 주사업과 ② 부사업별로 각각 2~3개씩 기입

(4) 산업분류부호

- 「사업내용」 및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의 내용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이용 하여 해당 산업분류 5자리(산업세세분류)까지 정확하게 기입

사업의 종류 예시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2	4	3	3	3
① 주사업	화장품제조업	6	0	색조화장품, 세정용화장품	2	4	3	3	3
② 부사업	포장용플라스틱성형용기 제조업	2	0	병마개, 플라스틱 용기	2	5	2	3	2

(2)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4	5	1	2	1
① 주사업	토목건축공사업	7	0	고속도로공사	4	5	1	2	1
② 부사업	철탑철골을 현장에서 절단조립함	3	0	철탑조립, 철골가공	4	6	1	2	4

(3) 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9	2	2	1	1
① 주사업	자동차종합수리(1급정비소)	8	0	승용차, 트럭, 버스	9	2	2	1	1
② 부사업	자동차경정비(카센터)	2	0	승용차	9	2	2	1	2

(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5	1	4	1	3
① 주사업	외의 도매	5	0	점퍼, 기성양복, 기성양장	5	1	4	1	3
② 부사업	선물용품 도매	4	5	모조장신구, 라이터, 열쇠고리	5	1	4	7	3

(5)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5	5	2	1	1
① 주사업	한식점	5	5	김치찌개, 순두부	5	5	2	1	1
② 부사업	스넥점	3	5	커피, 샌드위치, 라면	5	5	2	2	2

(6) 보험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4) 산업분류부호				
					6	6	0	1	0
① 주사업	생명보험	7	0	생명보험, 교육보험	6	6	0	1	0
② 부사업	부동산중개업	1	0	아파트, 단독주택	7	0	2	2	1

※ 551 숙박업 중 펜션업(Pension)

운영형태	산업분류
회원제 휴양펜션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민박형태 관광펜션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산업분류 구분방법

- ① 제조하여 출하, 도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출하 또는 도매하는 경우
 -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가공업자에게 제공·가공시켜 자사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 ② 제조하여 소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판매시설을 갖추고 최종소비자에게 소량·날개로 판매하는 경우
- ③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도매 => 도매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산업사용자에게 납품 또는 판매하는 경우
- ④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소매 => 소매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하지 않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시설을 갖추고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특히, 유의할 산업구분

- ① 제과점, 떡집 등의 경우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지 않고 판매 => 제조업
 - 사업체가 직접 제조(생산)한 제품을 객석을 갖추고 판매 => 음식점업
 - 빵이나 떡 등을 생산자나 도매업자 등에게서 받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소매업
- ② 매출액에 관계없이 산업업종이 결정되는 경우
 - 우체국의 경우 매출액 중 금융수익이 더 크더라도 우편업으로 분류
 - 호텔업의 경우 면세점 수익 등이 많더라도 호텔업이 주업이므로 호텔업을 주업으로 함
 - 웨딩홀에서 음식점 수입이 많더라도 수익의 원천인 예식장업으로 조사
 - 기타 예 : 장례식장, 극장, 테마공원 등

8] 종사자수

8 종사자 수		* 2005년 1년간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십시오.										(단위: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 계	
① 남													
② 여													
③ 계													

- 2005년 실제 사업기간(1. 1.~12. 31.) 중에 근무한 월평균 종사자수를 종사상 지위별, 성별로 구분하여 기입

※ 단, 2006년도에 신규 창설한 사업체는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

- 종사자에 포함되는 경우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사업체에 파견한 종사자 또는 용역을 준 업체에 나가 일하는 종사자
- 병가자, 단기휴가자, 파업중인 자, 외국인 취업자, 공공근로요원, 종교단체 봉사자 중 상시적으로 봉사하는 자 등

- 종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근무 중 군입대자,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봉사단체의 1일 봉사요원, 각종 단체의 회원, 종교단체의 신자
- 무급 비상근임원, 파견받은 근로자,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청소부, 경비원 등)
- 월평균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 업무에 종사한 자 등

※ 월평균 종사자수 계산 방법

예제) 영업 개월 수가 6개월이고 영업월과 종사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영업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계
종사자수(명)	16	18	15	14	19	16	98

· $(16+18+15+14+19+16)/6=16.3$, 반올림하면 16명

○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1) 자영업주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는 경영자 모두 자영업주로 조사
- 「자영업주」에 1명 이상이 조사되면 조직형태는 반드시 개인사업체 임

(2)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임금 또는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일 종사자에 포함

(3) 상용종사자

- 고용주와 1년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
-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컫는 자)
 - ※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상용종사자임
-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되나, 무급 비상근임원인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님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는 임시 및 일일종사자에 포함(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일일단위로 고용된 자
 - 일반적으로 임시, 일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상여금 등 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 ※ 건설현장의 노무자 등 일일 종사자는 해당 업체에서 응답한 내용이 연인원인지를 반드시 질의하여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 ※ 연인원이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소요된 일수를 두고, 그 일을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인원수 (30명이 40일 일했으면 연인원은 1,200명)

(5)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 지급받는 자동차·보험설계사 등
 -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팁(봉사료)을 받고 종사하는 호스티스, 접대부, 목욕관리사 등
 - 개인등록사업자라 할지라도 실적급 또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며 지사, 영업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지사나 영업소 등의 무급종사자로 조사

9] 연간매출액 및 연간 영업 개월수

9 **연간매출액** • 2006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과 영업한 개월수를 기입하십시오.

• 총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예산집행액, 지원금 등) • 연간 영업 개월수 개월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2005년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과 영업한 개월수를 기입한다.

- 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연간총매출액은 각 사업장별로 조사해야 하며, 본사를 조사할 때 각 공장, 지점, 지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상품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유형
 - 대금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 자가소비한 상품대금
 - 물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 건물, 토지 또는 기계장비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 보건업의 의료비 수입, 학교 수업료(등록금) 수입, 수리업의 수리비 수입 등
- ※ 일반 업종에서 임대수입, 수입이자 등은 영업수익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익, 금융업의 이자수익 등은 해당 업종에서 당연히 영업수익임

❑ 업종별 매출액 유형

- 농업·임업 및 어업
 - 판매액 또는 출하액을 기입
 - 조경, 작물생산, 축산, 수렵, 어업 등의 관련 서비스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 광업·제조업
 - 제조업의 매출액은 출하액이 되며, 임가공 사업체의 경우 임가공 수수료 수입액이 이에 해당
 - 출하란 제조 또는 가공한 제품이 공장 밖으로 출고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공장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출하에서 제외됨

- 출하액은 출하된 「품목별 출하량」 × 「단가」로 환산하여 이를 합계한 것임

○ 전기·가스·수도사업

- 전기업은 전기판매 수입액을 기입
- 가스업은 가스판매 수입액을 기입
- 수도업은 급수수입액(수도사용료)을 기입

○ 건설업

- 공사기성액을 기입
- 공사기성액이란 2005. 1. 1.~12. 31.사이에 시공에서 완공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을 기입하며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경우는 동기간 중 진척된 부분의 금액만을 환산하여 기입

○ 도매 및 소매업

- 2005년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을 기입(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매출액 중 도·소매 이외의 다른 산업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기입
예) 상품매출총액, 타인의 상품을 대리판매 또는 중개하고 얻은 수수료 총액, 겸업사업체의 경우 도·소매 이외의 다른 산업의 매출액 포함

○ 숙박 및 음식점업

㉠ 객실료수입액

- 지난 1년간 객실을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대실료 수입총액
- 객실료에 음식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객실료 수입액에 포함

예) 객실료(식사포함) \ 10,000 → 객실료 \ 10,000

㉔ 음식료수입액

- 지난 1년간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한 음식, 주류 또는 기타 음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총액
 - 접객시설을 갖추고
 - ☞ 각종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식사류 판매
 - ☞ 피자·햄버거·치킨·김밥·분식 등을 판매
 - ☞ 단란주점, 간이주점 등 접객요원을 두고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주로 판매
 - ☞ 찻집, 제과점 등에서 각종 차류, 빵, 떡, 기타 음료수 등을 판매

㉕ 기타영업 수입액

- 지난 1년간 숙박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며 객실료 수입과 음식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수입 총액
 - 호텔에서 상품 또는 제품(도시락 등)을 판매, 수영장 사용료, 회의장 사용료 등

○ 운수, 창고업

- 육상, 수상, 항공 등의 운송업은 사람 및 화물의 운송수입액
-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여행알선료 수입액 또는 서비스 제공 수수료 수입액을 기입

○ 금융 및 보험업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여·수신,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총수익액 예) 보험료수익,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 배당금수익, 구상 이익 등 영업수익

㉖ 보험료수익

- 지난 1년간 원보험과 재보험계약 등을 근거로 받은 보험료 등
 - 보험료(재보험금)수익 = 원수보험료(재보험금) + 수재보험료

㉗ 이자수익

- 지난 1년간 자금의 예금, 투자, 대여 등을 통한 수익총액
 - 예치금이자, 단기매매증권이자, 매도가능증권이자, 만기보유증권이자, 대출채권이자 및 배당금이자 등

㉔ 수수료수익

-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수익 총액
- 수입수수료, 수입보증료, 중도해지수수료, 신용카드수입수수료, 국민주택기금관리수수료 등

㉕ 기타 영업수익

- ㉑ ~ ㉔를 제외하고 배당금수익, 구상이익 등 나머지 사업수익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
- 기타 영업수익에는 책임준비금환입액,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신탁업무 운용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기타 영업잡수익 등

○ 교육서비스업 및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등록금/의료, 사회복지 사업수익, 전입 및 기부금 수익, 시설사용료, 수수료 등 기타 사업수익

○ 통신업

- 우편 및 소포송달 수익, 우체국의 수익 중 금융부문수익, 전기통신사업수익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2005년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한 총수익액

■ 연간 영업 개월수는 2005. 1. 1. ~ 12. 31. 기간 중 실제로 영업 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

○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여도 1개월로 기입.

(예) 12일 영업 → 1개월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이 사업체는 현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까?

- 진출 및 폐업사업체는 진출 및 폐업시기를 조사합니다.
- 조사 비대상 및 중복 조사된 사업체는 사선처리(\\)합니다.

㉠ 2005. 12. 31. 이전 ㉡ 2006. 1. 1. ~ 2006. 4. 9. ㉢ 2006. 4. 10. ~ 2006. 4. 29. ㉣ 2006. 4. 30. 이후

❑ 사후조사 대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사업한 시기를 조사

- 조사비대상사업체 및 중복 조사된 사업체는 사선처리(\\) 한다.
- ※ 한개 사업체는 정상(비이동사업체)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중복처리 됨으로 주의 할것
- 신규사업체는 2006. 4. 10. 이후 창설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현 사업장 사업시기는 2006. 4. 10. 이후에 체크되어야 한다.
- 진출 및 폐업사업체는 진출 및 폐업시기를 체크한다.
- 계절 및 휴업사업체도 현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시기를 체크한다.

11 사업체 유형

11 사업체 유형

해당되는 번호에 이 사업체의 사업체 유형을 **✓**표하여 주십시오.



- ❑ 모든 사업체는 반드시 누락사업체, 중복사업체, 전입사업체, 비이동사업체, 계절 및 휴업사업체, 신규사업체, 진출사업체, 폐업사업체, 조사비대상사업체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만 기입되어야 한다.

12 조사누락사유

12 조사누락 사유

이 사업체가 총조사에서 누락된 사유를 표하여 주십시오. (16 번으로)

- | | |
|---|---------------------------|
| ① 조사대상 사업체 개념상의 착오로 인한 누락 | ⑤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사업체의 고의 누락 |
| ② 시장, 상가 등 건물 밀집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⑥ 조사구 경계가 불명확하여 누락 |
| ③ 지하, 빌딩 등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⑦ 휴업 및 계절사업체 누락 |
| ④ 구내공장, 회사, 학교, 관공서 등에 있는 사업체(식당, 매점 등)의 누락 | ⑧ 기타(사유 : _____) |

해당되는 누락사유를 해당번호에 체크 표 한다.

- 단, 조사누락 사유가 ⑧기타()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13 중복조사 사유

13 중복조사 사유

이 사업체가 총조사에서 중복 조사된 사유를 표하여 주십시오. (15 번으로)

- | | |
|-----------------------------|-------------------|
| ① 조사구 및 행정구역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중복 | ③ 인터넷조사에 따른 중복 |
| ② 조사요원 착오에 의한 중복 | ④ 기타(사유 : _____) |

해당되는 중복조사 사유를 해당번호에 체크 표 한다.

- 단, 조사누락 사유가 ④기타()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14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14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이 사업체가 이곳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사업체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사업체명 :

2. 주 소 :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나머지 주소

❑ 2006. 4. 10.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해온 사업체일 경우 전입하기 전의 사업체명과 주소를 자세히 기입한다.

- 전입 이전 주소란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나머지 주소를 빠짐없이 작성한다.

바.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15 총조사 응답방법

15 총조사 응답방법 •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를 하십시오.

이 사업체의 총조사 당시 응답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기입 ③ 인터넷 이용 ④ 전화 이용 ⑤ 기타 ()

❑ 총조사 응답자가 조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조사합니다.

- 전입사업체의 경우 전입이전 장소에서 조사를 하였으면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⑤ 기타 ()란에 사유 기재

16 사후조사 응답자 사항

16 사후조사 응답자 사항

사후조사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 - -
	조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 - -

❑ 사후조사 응답자 및 조사관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3.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2005년 기준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 명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체명부 매수	조사담당자
매중 매	소속 : 이름 : (인)

총조사			전입 사업체 명	전입 이전 사업체주소	2005년기준 총조사 본조사 여부 (전입 이전 주소지)			비고
조사구 번호	특성번호	사 업 체 일련번호			조사 됨	조사 안됨	확인 불능	
합				계				

- 4월 10일 이후 표본조사구내로 전입한 사업체인 경우에 전입사업체명부를 작성하며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번호 및 사업체일련번호는 사후조사 조사표 내용을 이기한다.
 - 전입사업체는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사후조사표, 전입사업체명부의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번호 및 사업체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해야함
- 전입사업체의 전입 이전 사업체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나머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2005년기준 총조사 본조사 여부는 전입조사구의 조사관이 전출지의 해당 지방청(사무소, 출장소)에 의뢰하여 전입 사업체가 전출지에서 총조사 당시 조사표 작성 여부를 확인 후 기입한다.

VI. 내용검토

1. 내용검토

■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 신규, 누락, 중복, 전입사업체 등이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작성 요령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 모든 사업체가 사업체유형에 한 가지씩 빠짐없이 체크되었는지 확인
- 합계란의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수와 조사표의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수 일치확인
- 2005 총조사 당시의 조사원 인적사항이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 비고란에 전출·전입 일자가 기입되었는지 확인

■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

- 전입 이전 사업체 주소 및 2005년 기준 총조사 조사여부 등이 누락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

■ 조사표 검토

- 본조사 당시 조사대상여부 및 현재 영업 활동여부에 따라 조사표 조사항목이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확인
- 사업체유형에 따라 창설년월 등 조사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계절 및 휴업사업체에 대해서도 사후조사표가 조사되었는지 확인
 - 신규, 누락, 본조사 당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 뿐만 아니라 본조사시 대상외, 사업장 철거 및 폐쇄 사업체 장소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도 새로운 빈 사후조사표를 작성

▣ 항목별 내검 요령

난 외 사 항

난외사항은 절대 수정 불가

① 사후조사 사업체 일련번호

- 조사구역도, 사업체명부, 조사표의 사업체일련번호는 서로 일치
- 신규·누락·본조사시 조사되지 않은 전입사업체의 사업체일련번호가 표본조사구내의 마지막 사업체 일련번호에 이어서 부여되었는지 확인
- 빈 사후조사표에 작성된 경우 행정구역분류부호, 조사구번호 및 특성번호, 사업체일련번호 등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사업체 일련번호는 해당 조사구의 끝번호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

조 사 항 목

◎ 조사대상여부 및 영업활동여부

- 11사업체 유형에 따라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확인

사업체 유형		본조사 당시 조사대상여부	현재 영업활동여부	사후 조사표 작성
누락사업체		예	예 아니오	빈 조사표
중복 사업체	한개 비이동사업체	예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나머지 중복 사업체	아니오	-	
전입사업체		예	예 아니오	출력조사표 또는 빈 조사표
비이동사업체		예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계절 및 휴업사업체		예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신규사업체		예	예 아니오	빈 조사표
전출사업체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폐업사업체		예	아니오	출력 조사표
조사비대상사업체		아니오	-	출력 조사표

① 사업체명

- 사업체명은 절대 수정 불가
- 사업체명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하고,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명 또는 취급상품명을 기입
- ⑥항의 사업체구분란에 “③지사(점), 공장, 영업소”로 표시된 경우, 지점·공장·영업소명이 기입되지 않고 본사명이 잘못 기입되었는지 확인

☒ 소 재 지

- 사업체가 실제 소재하고 있는 법정 동(洞) 및 리(里)명, 번지, 통, 반 등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
- 특히 빌딩, 시장, 지하 등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경우 이의 명칭과 층, 호수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구 특성번호가 「2」, 「3」, 「4」인가를 확인

② 대표자명

- 사업체가 본사(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인 경우 본사의 대표자명이 기입되었는지를 확인
- 사업체가 지점(지점, 공장, 영업소 등)인 경우 지점장 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본사의 대표자명이 아님)
- 대표자의 성별구분이 표시되었는지 확인
- 개인사업체의 경우 총조사 출력사항의 대표자명과 사후조사 대표자명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정확한가 확인하고 창설년월도 연계하여 검토

③ 창설년월

- 업종변경, 상속자로 경영권이 이전되어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창설년월이 변경되지 않고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확인

- 창설년월은 산업활동을 처음 개설한 연월로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 개인사업체 : 처음 영업을 시작한 연도
 -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단체 : 법적 설립년월
-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창설년월을 재확인

④ 사업장 변동

- 총조사 사전출력사항 사업장변동이 대상외, 사업장 철거 및 폐쇄에 표시된 사업체가 현장 확인 결과 조사대상 사업체가 아니었는지를 확인
- 총조사 사전출력사항의 사업장 변동이 ③대상외 ④사업장 철거 및 폐쇄이고, 사후조사표 ④사업장변동이 ①사업장 존속 ②사업장 신설 및 누락인 경우, ⑪사업체유형에서 ①누락사업체로 조사되었는지 확인

⑤ 조직형태

- 해당되는 번호 한곳에만 기입되었는지 확인
- 「①개인사업체」인 경우, ⑧항의 「(1)자영업주」 수가 1이상인지 확인
- 대리점계약(혹은 특약점)을 맺고 독립적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 ① 개인사업체로 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 「②회사법인」 「③회사이외 법인」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⑤비법인단체」인 경우, ⑧항에 「(1)자영업주」 또는 「(2)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서는 안됨

⑥ 사업체 구분

- 표본 조사구내 모든 사업체는 해당되는 번호 한곳에만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

- 조직형태가 ④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①단독사업체」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7] 사업의 종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산업세세분류 단계까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겸업인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내용, 비중,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 산업분류부호가 기입되었는지 확인
- 산업분류부호
 - 사업내용과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에 따라 산업분류를 올바르게 분류하여 기재하였는지 확인
 - 기재내용이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쉽게 분류되지 않을 경우 통계청 산업통계과로 문의하여 결정
 -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인 경우 산업분류부호가 01*** ~ 05***(농·림·어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52820(노점 및 유사 이동판매업), 52899(그외 기타 무점포소매업), 55223(이동음식점)등의 산업분류부호가 있는지 확인

8] 종사자수

-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인 경우 자영업주가 1인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단체』인 경우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없어야 함
-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았는지 또는 빠짐 없이 조사되었는지,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로 환산하여 기입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수의 각 개별항목 합계가 맞는지 확인

-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특히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았는지 재 확인
- 본사·본점의 경우 지사·점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조사되지 않았는지 확인

9] 연간매출액

-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연간매출액이 적절히 조사되었는지 확인
- 연간매출액을 종사자수, 사업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영업비용과 비교해 불합리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 올바른 수치로 기입
- 창설년도가 2006년인 사업체는 기입하지 않음
-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연간 영업 개월수가 적절히 조사되었는지 확인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

- 조사 비대상 및 중복조사된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체크되었는지 확인한다.
 - 진출 및 폐업 사업체도 진출 및 폐업시기가 조사되었는지 확인
- 조사비대상 및 중복조사된 사업체는 사선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11] 사업체 유형

- 모든 사업체가 체크되었는지 확인한다.
-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에 사선처리(\\)된 사업체는 조사비대상 또는 중복사업체로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반드시 한 군데만 체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유형이 신규사업체인데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가 ③, ④가 맞는지 확인한다.

12 조사누락 사유

- 「11 사업체 유형」이 누락사업체인 경우 조사누락사유가 빠짐없이 V표 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누락 사유가 ⑧기타()에 해당되면 구체적인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확인

13 중복조사 사유

- 「11 사업체 유형」이 중복사업체이면 중복조사 사유란이 빠짐없이 V표 되었는지 확인한다.
 - 중복조사 사유가 ④기타()에 해당되면 구체적인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확인

14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 「11 사업체 유형」이 ③전입사업체이면 반드시 전입 이전 주소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나머지 주소까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입 이전 사업체명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15 총조사 응답방법

- 「11 사업체 유형」에서 누락, 신규, 전출, 폐업 및 조사비대상 사업체는 조사되지 말아야 됨

16 사후조사 응답자 사항

- 사후조사 응답자(조사자)의 성명, 전화번호는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2. 오류유형

❑ 입력된 자료를 전산으로 내검하여 오류 사업체 및 오류 사항을 확인하고 수정

❑ 내검구분은 필수와 검토가 있음

- 필수 :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오류
- 검토 : 검토가 필요한 오류로, 확인하여 선택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오류

❑ 오류유형

- 공통사항

오류 코드	오류항목	오류 내용	내검 구분
A01	행정구역분류부호	「행정구역분류부호」 이외인 경우	필수
A02	조사구번호	「조사구번호」가 001 ~ 999가 아님. 숫자가 아닌 공백이나 문자	필수
A03	조사구특성번호	「조사구 특성번호」가 1 ~ 4가 아닌 경우. 숫자가 아닌 공백이나 문자	필수
A04	사업체일련번호	「사업체일련번호」가 001 ~ 999가 아닌 경우. 숫자가 아닌 공백이나 문자	필수
A05	조사구특성번호	한 조사구내 각 사업체에서 부여된 조사구 특성번호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필수
A06	사업체일련번호 중복	사후조사의 「사업장변동」이 1, 2이면서 「난외사항의 총조사번호(행정구역·조사구·사업체일련번호)」가 중복인 경우 - 단, 사전출력사항의 「사업장변동」이 3, 4인 경우는 제외	필수
B01	조사대상여부	「조사대상여부」가 1, 2가 아니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B02	조사대상여부 현재영업활동여부	「조사대상여부」가 1인데 「현재 영업활동여부」가 1, 2가 아니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B03	조사대상여부 조사항목	「조사대상여부」가 2인데 「조사항목」 2 ~ 9가 있는 경우	필수
B04	조사대상여부 조사항목	「조사대상여부」가 1이고 「현재영업활동여부」가 1인데 「조사항목」 1 ~ 9가 누락인 경우 - 단, 「3.창설년도」가 2006년도인 경우는 9번 「연간매출액」항목은 제외	필수
B05	조사대상여부 조사항목	「조사대상여부」가 1이고 「현재영업활동여부」가 2인데 「조사항목」 2 ~ 9가 있는 경우 - 단, 「11.사업체유형」의 「⑤계절 및 휴업사업체」는 제외	필수
B06	조사항목 11. 사업체유형	「11.사업체유형」이 「⑤계절 및 휴업사업체」이면서 「조사항목」 1 ~ 9가 없는 경우	필수

○ 아래 사항은 조사대상여부가 1이고 현재영업활동이 1인 경우만 해당됨

오류 코드	오류항목	오 류 내 용	내검 구분
C01	1. 사업체명	「사업체명」 기입이 누락된 경우	필수
C02	1. 소재지	「소재지」의 읍면동이 누락된 경우	필수
C03	1. 소재지	「소재지」의 번지가 누락된 경우	필수
D01	2. 대표자명	「대표자명」이 누락된 경우	필수
D02	2. 대표자명 성별	「대표자명 성별」이 1, 2가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E01	3. 창설년월	「창설년도」가 누락된 경우	필수
E02	3. 창설년월	「창설년월」이 2006년 07월 이후인 경우	필수
E03	3. 창설년월	「창설월」이 01 ~ 12가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E04	3. 창설년월	「창설년도 < 500」이거나, 「창설년도 > 2006」인 경우	필수
F01	4. 사업장 변동	「사업장변동」이 1 ~ 2가 아니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G01	5. 조직형태	「조직형태」가 1 ~ 5가 아니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G02	5. 조직형태 6. 사업체구분	「조직형태」가 4 이면서 「사업체구분」이 10이 아닌 경우	필수
H01	6. 사업체구분	「사업체구분」이 1 ~ 3 이 아니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I01	7. 사업의 종류	「산업분류부호」가 산업분류코드(5자리)이외이거나 누락인 경우	필수
I02	7.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과 「주요 취급품목 및 영업종목」입력이 누락된 경우 (주사업의 경우만)	필수
I03	7. 사업의 종류	· 「주사업의 비중 + 부사업의 비중 > 100」인 경우 · 「주사업의 비중 <=0」인 경우	필수
I04	7.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비중 < 부사업의 비중」인 경우	필수
I05	7.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가 52820, 52899, 55223, 95***, 99***」인 경우	필수
I06	5. 조직형태 7.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가 1인데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가 01***, 02***, 05***, 3412*, 35201, 40***, 41***, 601**, 60211, 60220, 604**, 62***, 651**, 6591*, 65921, 65931, 65939, 65991, 660**, 6711*, 6712*, 76***, 80120, 802**, 803**, 804**, 8721*, 91***」인 경우	검토
I07	5. 조직형태 7.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가 2인데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가 41***, 601**, 64110, 6511*, 65911, 76***, 801**, 802**, 803**, 804**, 85130, 91***인 경우	검토

오류 코드	오류항목	오 류 내 용	내검 구분
I08	5. 조직형태 7.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가 76***, 85130 인데 「조직형태」가 4가 아닌 경우	검토
I09	5. 조직형태 7. 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가 65110인데 「조직형태」가 3이 아닌 경우	검토
I10	7. 사업의 종류 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 100」이고,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부호」가 92122, 92213, 8512*, 8519*, 9120*, 9192*인 경우	검토
I11	7. 사업의 종류 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 300」이고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가 01***, 02***, 05***, 11***, 12***, 50***, 5212*, 522**, 523**, 524**, 525**, 526**, 552**, 71***, 801**, 802**, 852**, 86***, 90***, 93***인 경우	검토
I12	7. 사업의 종류 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 20」인데 「사업의 종류 주사업의 산업분류」가 5211*, 85111인 경우	검토
J01	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 0」인 경우	필수
J02	8.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 5000」인 경우	검토
J03	8. 종사자수	「남자」의 「자영업주 + 무급가족 + 상용 + 임시 및 일일 + 무급종사자」가 「남자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4	8. 종사자수	「여자」의 「자영업주 + 무급가족 + 상용 + 임시 및 일일 + 무급종사자」가 「여자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5	8. 종사자수	「계」의 「자영업주 + 무급가족 + 상용 + 임시 및 일일 + 무급종사자」가 「계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6	8. 종사자수	「자영업주」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7	8. 종사자수	「무급가족종사자」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8	8. 종사자수	「상용종사자」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09	8. 종사자수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10	8. 종사자수	「무급종사자」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11	8. 종사자수	「합계」의 「남」 + 「녀」가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
J12	5. 조직형태 8. 종사자수	「조직형태」가 2, 3, 4, 5인데 「종사자수」중 「상용 + 임시 및 일일 + 무급」이 0인 경우	필수
J13	5. 조직형태 8. 종사자수	「조직형태」가 2, 3, 4, 5인데 「종사자수」중 「자영업주 + 무급가족」이 10이상 인 경우	필수

오류 코드	오류항목	오 류 내 용	내검 구분
J14	5. 조직형태 8. 종사자수	「조직형태」가 1인데 「종사자수」 중 「자영업주」의 「계」가 0인 경우	필수
J15	2. 대표자 성별 8. 종사자수	「대표자 성별」이 1인데 「자영업주 남 + 상용종사자 남」 = 0인 경우. 단, 91***은 제외	검토
J16	2. 대표자 성별 8. 종사자수	「대표자 성별」이 2인데 「자영업주 여 + 상용종사자 여」 = 0인 경우. 단, 91***은 제외	검토
K01	9. 연간 매출액	「총매출액」이 0이 아닌데 「총매출액」 > 종사자수 합계 × 5000」인 경우	검토
K02	3. 창설년월 9. 연간 매출액	「창설년월」 >= 2006」인데 「총매출액」 또는 「연간영업개월수」가 있는 경우	필수
K03	3. 창설년월 9. 연간 매출액	「창설년월」 < 2006」인데 「연간영업개월수」 또는 「총매출액」이 없는 경우	필수
K04	9. 연간 영업개월수	「사업장변동」이 1, 2이고 「창설년월」 < 2006」이면서 「연간영업개월수」가 01 ~ 12가 아닌경우	필수
K05	9. 연간 영업개월수	「창설년월」 < 2006」이고 「총매출액」 > 0」인데 「연간영업한개월수」가 0인 경우	필수
L01	10. 현 사업장 사업 시기 11.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이 「② 중복사업체, ⑨ 조사 비대상」이 아닌데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가 ①, ②, ③, ④가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L02	10. 현 사업장 사업 시기 11.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이 「② 중복사업체, ⑨ 조사 비대상」인데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가 ①, ②, ③, ④인 경우	필수
L03	10. 현 사업장 사업 시기 11. 사업체 유형	「사업체 유형」이 「⑥ 신규사업체」인데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가 ③, ④가 아닌 경우	필수
L04	11. 사업체 유형 12. 조사누락 사유	「사업체 유형」이 「① 누락사업체」인데 「12. 조사누락 사유」가 ① ~ ⑧이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L05	11. 사업체유형 13. 중복조사 사유	「사업체 유형」이 「② 중복사업체」인데 「13. 중복조사 사유」가 ① ~ ④가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L06	11. 사업체유형 14. 전입 이전 사업 체명 및 주소	「사업체 유형」이 「③ 전입사업체」인데 「14. 전입 이전 사업 체명 및 주소」의 정보가 없는 경우	필수
L07	11. 사업체유형 15. 총 조사 응답 방법	「사업체 유형」이 「② 중복사업체, ③ 전입사업체, ④ 비이동 사업체 ⑤ 계절 및 휴업사업체」인데 「총조사 응답 방법」이 ①, ②, ③, ④, ⑤가 아니거나 공백인 경우	필수

VII. 행정사항

1. 사후조사 조사표류 제출

가. 제출자료

- 조사구요도 복사본
-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 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 사후조사표
-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나. 제출방법

- 사후조사결과는 지정한 날짜에 각 지방청 혹은 사무소(출장소분 취합)별로 인편으로 본청 산업통계과에 제출
- ①사후조사 사업체명부, ②사후 조사구 요도, ③사후조사 전입 사업체명부, ④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⑤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⑥사후조사표(사업체일련번호순)를 순서적으로 조사구별로 함께 철하여 제출

다. 제출일자 : 2006. 7.10.~7.14.

2. 사후조사 전입사업체 대조 작업

- 2006. 7. 3. ~ 7. 7. 기간중에 전입사업체를 진출지 관할 지방통계청 (사무소, 출장소)에서 본조사 당시 조사표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조사 전입사업체명부”의 2005년기준 총조사 본조사 조사여부 (전입 이전 주소지) 란에 표시함

3. 사후조사표 입력 및 내검

- 사후조사 입력 프로그램은 추후 통보
- 사후조사표 입력 및 내검요령서는 추후 실사지도시 배부 예정
- 입력 및 내검은 2006. 7. 3. ~ 7. 7.

4.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 현황표

- 작성대상 :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 착오가 발생한 모든 사업체는 조사대상 사업체구분 착오 현황표를 작성해야 함
 - 2개이상 사업체를 1개 사업체로 조사
 - 1개 사업체를 2개이상 사업체로 조사
- 기입 방법 : 본조사 사업체정보를 우선 기입하고 사후조사 사업체 정보를 순차적으로 기입

5.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 사후조사 조사구별로 「 사업체 유형」이 조사 비대상인 사업체가 존재하면 조사 비대상 사유를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양식에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행정사항

- 난외사항 및 사전출력사항은 절대 수정 불가
- 이번 사후조사의 핵심은 누락사업체 확인, 창설년월 및 대상외, 사업장 철거 및 폐쇄 사업체의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인사장, 사후조사 전입사업체명부,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조사대상 사업체 구분착오 현황표 양식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홈페이지(<http://eb.nso.go.kr>)에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사후조사에 대한 품질진단 또는 확인 점검이 있을 예정이므로 철저한 사후조사 실시 요망
- 출력된 사후조사표는 반드시 6월 15일 당일에 배부 할것
- 기타 문의 사항은 042)481-2135, 2136으로 전화, 또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홈페이지(<http://eb.nso.go.kr>)의 Q&A코너를 활용

2005년 기준 사후조사 사업체명부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명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	⋮

사업체명부 매수	조사담당자
매종 매	소속 : 이름 : (인)

총조사			사업체명	주소	사업체유형									응답사업체	비고 (전출·전입·일자 등)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사업체일련번호			① 누락	② 중복	③ 전입	④ 비이동	⑤ 계절 및 휴업	⑥ 신규	⑦ 전출	⑧ 폐업	⑨ 조사비대상		
합 계															

조사구의 특이사항에 관한 의견란	2005 총조사 조사원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 성별 : ① 남 ② 여 - 연령 : 만()세 - 직업 : ①통리반장 ②가정주부 ③부녀회원 ④대학생 ⑤ 퇴직공무원 ⑥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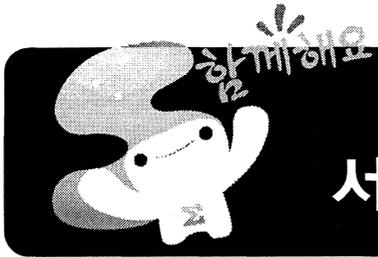
사후조사 조사구별 문제점

행정구역명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 -

구 분		문제점 및 담당자 의견
조 사 과 정	문제점	
	의 견	
조 사 구 요 도	문제점	
	의 견	
조 사 비 대 상 사 업 체	문제점	
	의 견	
조 사 항 목	문제점	
	의 견	
기 타	문제점	
	의 견	

행정구역분류번호									
		-						-	
총 조 사									
조사구번호					사업체일련번호				
				-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사후조사표

● 총조사 사전출력 사항

사업체명						응답자	성명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자	전화	() - ()		
창설년월			년			월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호	통	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사업장 변동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③ 대상외 ④ 사업장 철거 및 폐쇄

조직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단체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번호
① 주사업				
② 부사업				

종사자 수

(단위: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계
① 남						
② 여						
③ 계						

연간매출액

• 총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예산집행액, 지원금 등) • 연간 영업 개월수 개월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	---	----	----	----	---	----	-----

○ I. 사업체에 관한 사항

본조사 당시 조사 대상 여부

이 사업체는 본 조사 당시 조사 대상 사업체인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 **10**번으로

현재 영업 활동 여부

조사대상이라면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0**번으로

1 사업체명

소재지	읍·면·동	가·리	번지	호	통	반
	빌딩·시장·상가		동	층	호	

2 대표자명

성별	① 남	② 여
----	-----	-----

3 창설년월

년	월
---	---

4 사업장 변동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① 사업장 존속 ② 사업장 신설 및 누락

5 조직 형태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⑤ 비법인단체

6 사업체 구분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점) ③ 지사(점), 영업소, 공장

7 사업의 종류

	(1) 사업내용	(2) 비중(%)	(3) 주요 취급품목 또는 영업종목	(4) 산업분류번호
① 주사업				
② 부사업				

8 종사자 수

• 2005년 1년간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십시오. (단위: 명)

	(1) 자영업주	(2) 무급가족종사자	(3) 상용종사자	(4) 임시 및 일일종사자	(5) 무급종사자	(6) 합계
① 남						
② 여						
③ 계						

통 계 청

시(도)

9 연간매출액

• 2005년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과 영업한 개월수를 기입하십시오.

• 총매출액(출하액, 판매액, 기성액, 예산집행액, 지원금 등)

• 연간 영업 개월수 개월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10 현 사업장 사업시기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이 사업체는 현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까?

- 진출 및 폐업사업체는 진출 및 폐업시기를 조사합니다.
- 조사 비대상 및 중복 조사된 사업체는 사선처리(\\)합니다.

- ① 2005. 12. 31. 이전 ② 2006. 1. 1. ~ 2006. 4. 9. ③ 2006. 4. 10. ~ 2006. 4. 29. ④ 2006. 4. 30. 이후

11 사업체 유형

해당되는 번호에 이 사업체의 사업체 유형을 표하여 주십시오.

- | | | | | |
|---------------|---|---------------|----------|-------------------|
| ① 누락사업체 | → | 12 번으로 | ⑥ 신규사업체 | } → 16 번으로 |
| ② 중복사업체 | → | 13 번으로 | ⑦ 진출사업체 | |
| ③ 전입사업체 | → | 14 번으로 | ⑧ 폐업사업체 | |
| ④ 비이동 사업체 | → | 15 번으로 | ⑨ 조사 비대상 | |
| ⑤ 계절 및 휴업 사업체 | | | | |

12 조사누락 사유

이 사업체가 총조사에서 누락된 사유를 표하여 주십시오. (**16** 번으로)

- | | |
|---|---------------------------|
| ① 조사대상 사업체 개념상의 착오로 인한 누락 | ⑤ 응답자를 만나기 어려운 사업체의 고의 누락 |
| ② 시장, 상가 등 건물 밀집지역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⑥ 조사구 경계가 불명확하여 누락 |
| ③ 지하, 빌딩 등에 있는 사업체의 누락 | ⑦ 휴업 및 계절사업체 누락 |
| ④ 구내(공장, 회사, 학교, 관공서 등)에 있는 사업체(식당, 매점 등)의 누락 | ⑧ 기타(사유: _____) |

13 중복조사 사유

이 사업체가 총조사에서 중복 조사된 사유를 표하여 주십시오. (**15** 번으로)

- | | |
|-----------------------------|-----------------|
| ① 조사구 및 행정구역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중복 | ③ 인터넷조사에 따른 중복 |
| ② 조사요원 착오에 의한 중복 | ④ 기타(사유: _____) |

14 전입 이전 사업체명 및 주소

이 사업체가 이곳으로 전입하기 이전의 사업체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1. 사업체명:

2. 주 소:

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나머지 주소

II.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15 총조사 응답방법

•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이 사업체의 총조사 당시 응답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기입 ③ 인터넷 이용 ④ 전화 이용 ⑤ 기타(_____)

16 사후조사 응답자 사항

사 후 조 사	응답자	성명	전화 번호	() -
		조사자	성명	(인) 전화 번호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